

『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문화도시 지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조직인 문화도시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.
- 관 주도가 아닌 민간과 협력관계 유지,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시민을 문화적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, 전문지식 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 민간위탁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5조
 - 「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제15조
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

- 필요성

- 문화체육관광부의 <문화도시 지정 공모> 심의요건 충족
-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조직 필요

○ 위탁사무내용 :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

- 문화도시 사업 기획·홍보·운영
-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·운영 등
- 문화인재 양성 및 지원 : 문화청년활동가 및 문화전문인력 양성
- 도시가치 발굴·활용 : 문화도시 포럼·아카이브, 문화도시 브랜딩
- 지역문화 활성화 : 문화공동체 육성, 문화기획지원
-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 : 문화도시 여행, 도시교류 프로그램 등

○ 위탁기간 : 2022년 ~ 2025년(3년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소요예산 : 연 240백만원(민간위탁금)

인건비	• 보수(4인) - 센터장(1명-5급상당) 연봉 61,684천원 - 팀 장(1명-6급상당) 연봉 51,098천원 - 팀 원(2명-8급상당) 연봉 39,222천원 • 기타(수당, 보험, 퇴직금 등) 21,000천원 ※ 202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(임기제 연봉 하한액 기준)	212백만원
운영비	• 일반수용비 6,000천원 • 임차료·공공운영비 8,000천원 • 자산취득비 6,000천원 • 기타경비(여비, 업무추진비 등) 8,000천원	28백만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 등
- 예산조치 : 2022년 추경 편성 예정
- 기 타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문화도시 사업 전반을 기획·실행하는 전문조직의 구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문화 전문 인력을 보유한 조직인 <문화도시 지원센터>의 구축 여부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중요한 심의 요건 중 하나(배점 30점, 100점 만점)이며,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타 지자체의 경우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갖추었던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던 사례를 감안하면,
-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당 조직의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문화전문가 조직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